

#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

**한국항공대학교**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4.1.16.		16		
2	2015.1.13.		17		
3	2016.5.27		18		
4	2018. 3. 1		19		
5	2018.4.13		20		
6	2018.6.15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2항,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제4항 내지 제31조제3항 및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·의결한다.

1.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액 및 인상·인하를 심의
2. 예산 및 결산 심사·의결

**제3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, 학생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**제4조 (자격)** ① 교직원 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재직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., 2018.4.13>

② 학생 위원은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개시 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대상 학년도 재학예정자로 위촉 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.13.>

③ 관련전문가 위원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15.1.13.>

④ 제1항, 제2항 본문, 제3항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15.1.13.>

**제5조 (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)** ① 교직원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8.6.15>

②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관련 전문가 위원은 대학의 재정과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교육 행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학부모 위원은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에서, 동문 위원은 총동문회 소속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**제6조 (임기)**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
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7조 (회의)**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4.13>

**제8조 (의결)**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9조 (비밀유지)**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위원회의 사무)** ① 위원회의 사무는 예산평가팀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6.5.27.>

② 사무부서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8.3.1>

**제11조 (수당)** 위원회 위원 중 교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13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